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이은주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1100호

다. 제출일자 : 2019. 10. 16.

라. 회부일자 : 2019. 10. 22.

2. 제안사유

-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는 권고에 따름
-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 지역별, 자치단체별 차이가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등록번호판 발급·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의 마련하여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. (안 제8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9. 10. 25 ~ 2019. 11. 1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) : 원안가결

○ 우리시는 공개모집으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음

- 평가기준 : 사업계획서, 번호판 발급수수료, 이용자 편의성,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등

-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6조)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과 공개 모집으로 정한 발급수수료를 지정·고시하겠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(이하 "등록번호판") 발급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정·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산출 등 발급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무 개요

- 현행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"법")제20조제1항에서 "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"대행자")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
- 서울시는 법 및 현행 조례 제3조 및 제4조 등¹⁾에 따라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5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'18년 3개 권역별²⁾로 대행자를 선정³⁾하여 '19년 10월부터 신규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

1) 제3조(대행자의 지정기간)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4조(대행자의 지정방법)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- 이하 생략 -

2) 강남권(광진·동작·서초·강남·송파·강동), 강서권(은평·서대문·마포·양천·강서·구로·금천·영등포·관악), 갈북권(종로·중구·용산·성동·동대문·중랑·성북·강북·도봉·노원)

3)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모집 공고(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2329호, 18.10.25, 서울특별시장)

<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원 및 선정업체 현황>

| 사업구역 | 연번 | 지원 업체명 | 대표자 | 소재지 | 비 고 |
|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강남 | 1 | 이창기업(주) | 김0원 | 송파구 중대로 239(오금동) | 선 정 |
| 강서 | 1 | (주)오00릭서비스 | 박00 | 강서구 00 | |
| | 2 | 오토플러스(주) | 김0명 | 강서구 양천로53길 30 1201호(가양동) | 선 정 |
| 강북 | 1 | (주)동00앤드에스 | 이00 | 동대문구 00 | |
| | 2 | 한국비주얼(주) | 전0수 | 중랑구 망우로 259(상봉동) | 선 정 |

- 현재 대행자들이 부과하는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각 권역별로 최종 선정된 업체들이 모집 공고 당시 제시한 발급수수료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되고 있음
- 참고로 현행 서울시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대형 8,200원, 보통 6,800원, 이륜차 2,800원으로 6개 특별·광역시 중에 가장 수수료가 비싼 울산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대형 63%, 보통 62%, 이륜차70% 수준이며, 이 외에 전기자동차 및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발급 수수료⁴⁾도 별도 산정되어 있음

<특별·광역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및 발급수수료 현황>

| 구 분 | 서울 | 부산 | 인천 | 광주 | 대구 | 대전 | 울산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'18차량등록 대수 | 3,124,651 | 1,371,172 | 1,577,607 | 664,316 | 1,178,353 | 669,959 | 558,106 | |
| '18년발급량(조) | 423,171 | 119,846 | 218,663 | 43,514 | 118,756 | 82,300 | 41,404 | |
| 대행업체 수 | 3 | 2 | 2 | 3 | 2 | 2 | 3 | |
| 대행기간(년) | 5 | 5 | 5 | 5 | 5 | 5 | 5 | |
| 발급 수수료 | 대 형 | 8,200 | 8,800 | 11,000 | 7,700 | 8,200 | 10,600 | 13,000 |
| | 보 통 | 6,800 | 7,600 | 8,800 | 7,100 | 6,700 | 9,600 | 11,000 |
| | 이륜차 | 2,800 | 2,900 | 3,300 | 2,400 | 2,400 | 3,500 | 4,000 |

4) '서울시 전기자동차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발급수수료'-전기자동차(21,500), 단기(2,100원) 장기(8,100원)

■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고시 관련(안 제8조의2)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, 대행자는 동 기준에 따라 등록번호판 종류별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시장이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대행자에게 재산출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-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가격은 당초 고시가격이었으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'99년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·공급자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,

현행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5)에서는 “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발급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할 경우 대행자는 명확한 산출내역을 발급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수수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
- 이에 따라 지난 '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“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번호판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'19년 4월까지 마련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⁵⁾
- 따라서, 동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재 각 권역별 대행자들이 제출하는 수수료를 산술평균하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을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보다 합

5) 제12조(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)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.

6)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, 의안번호 2018-198(2018.5.18.)

리적인 수수료를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
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에 기
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

- 다만,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'19년 4월까지 발급수수료 원가산
정기준 및 수수료 재산정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하였음에도 불
구하고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
있다고 할 것인 바,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임